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국민경제·안보·신산업 창출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36호,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및 확인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다.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제9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 업무의 지원을 위한 정

책지원기관의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 확산의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함

마.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방법, 현황 조사·분석 방법,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표준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제17조)

특화연구소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사.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18조)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대상을 구체화하고, 설립·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9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괄사업책임자를 사업 및 과제의 기획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제20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요건, 운영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하고, 비용 지원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함

차.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시기·방법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지원 내용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구체화함

카. 외국 정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5조)

보안과제로 지정된 전략연구과제와 국민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타.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28조)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 재원 부담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공동 재원 마련을 통한 해외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5. 18. ~ 6. 27.)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10.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선정·유지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의 연계·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관한 사

항

5.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별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관별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수요 조사, 민간 전문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 경쟁 상황
2. 국제 기술 수출 규제 동향
3.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술육성주체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선정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진보된 기술의 출현, 국가전략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선정 해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기술육성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설명 및 범위를 적은 문서 및 요약서
2.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에 관한 자료

3. 해당 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함을 입증할 자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의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초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2. 신기술·신산업 창출 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연구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의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추는 등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한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 중 국가경제·안보 측면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전략기술의 개발사업과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 고도화, 기술 실증 및 사업화 등 후속 사업 추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전략연구과제의 성과가 사업화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권리화와 관리 지원
2. 전략연구사업 성과와 관련된 교육·홍보 활동

⑥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2. 제1호의 조직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둘 것

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 성과확산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 성과확산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4. 법 제13조제7항 각 호와 관련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매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13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관리 및 유통의 대상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기술이전·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

연구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관리 및 유통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 조사·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따른 국가전략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및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분석한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육성주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 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기술육성주체 등이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서의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

3. 그 밖에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관련 연구·조사,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충족 여부 평가 관련 연구 및 지원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것

5.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수한 연구성과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특허연구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연구소 운영을 위한 계획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특허연구소 운영을 위한 예산조달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기술 개발 및 관련 인력의 육성·확보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특허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특허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의 특허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⑥ 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력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화연구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업 중 법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과 함께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공동연구소를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설립·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운영 목적
2.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운영을 위한 예산조달계획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계획
4. 기업공동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업의 현황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연구 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지원체계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경우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2.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개선 필요사항 발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관성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과학기술혁신환경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 기술개발 성과의 지역산업 확산·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방안의 타당성·구체성

3. 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협력 가능성

4.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관리할 전문 인력 및 재원 확보 계획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제21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협력 사업
2. 국가전략기술 교육센터 지원 사업
3.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운영 사업

제22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그 밖에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이하 “인력 수급동향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참여연구원의 과제·성과 정보 및 고용·직업 현황
2.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현황 및 실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력 수급동향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교원현황(교원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교육평가방법
5.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간교육계획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교육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대학원이 설치된

교육기관일 것

2.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④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전문인력 양성

2. 국가전략기술 연구

3. 특화대학원의 설립·운영

4. 산·학 공동 운영 학위과정의 설치·운영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화교육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제25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보안과제로 지정된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비공개 정보로서 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연구지원인력을 의미한다), 연구성과,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2.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정보의 내용

③ 법 제27조제2항에서의 외국의 기관은 외국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및 외국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국방·안보분야 협력 촉진)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 기술자료 및 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력의 상대국이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사업 수행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 다자간 국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에 파견 또는 소속되어 연구를 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접수, 사실관계 조사·확인 및 결과 통보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앞 쪽)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전자우편:)		
	사업장			
	(전화번호:)(전자우편:)			

신청사유

신청내용	대상 국가전략기술	
	신청하는 기술정보	1. 기술명
		2. 기술 개요 및 기술분야
		3. 기술적 특성 및 혁신성
		4. 기술 개발 단계 및 수준
		5. 기술의 적용 분야
	신청하는 기술을 연구·관리·보유 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함을 입증할 자료	1.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2.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
		3.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4. 해당 기술의 매출 현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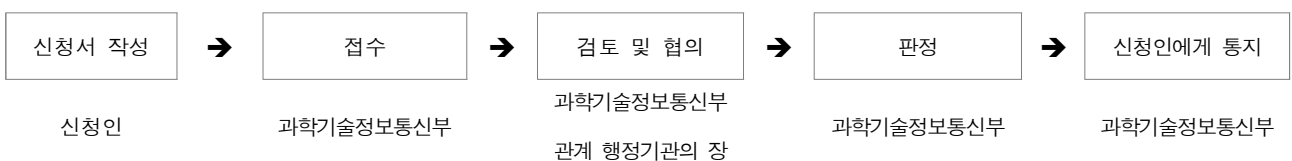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설명 및 범위를 적은 문서 및 요약서	수수료 없음
	2.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에 관한 자료	
	3. 해당 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함을 입증할 자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사유”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이 필요한 이유 및 신청하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작성합니다.
2. “대상 국가전략기술”은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한 국가전략기술의 명칭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은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를 별도 첨부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4.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은 해당하는 경우 핵심기술의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5.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하며, 해외 특허인 경우에는 기술 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제출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6. “해당 기술의 매출 현황”은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자의 매출 현황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연 락 처	(044) 202 - 6731